

1.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과의 신속한 상호공조 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인력 4명(경정 4명)을 증원하며, 증원되는 인력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

3.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관리 및 119종합상황실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황담당관(4명)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119종합상황실) ① 119종합상황실에 상황담당관 4명을 두며,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119종합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재해, 그 밖의 상황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재난등의 접수·처리·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 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4. 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전달 및 처리
5. 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기록·통계 관리 및 정보 분석
6.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상황관리 및 운영·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
9.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10. 중앙119구조본부의 출동 지령·관제에 관한 사항

별표 3 중 총계 “274”를 “279”로 하고, 일반직 계 “38”을 “39”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의무사무관·간호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0”을 “11”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항공관제 담당) 2 다음에 “경찰공무원 계 4”를 신설하며, 경찰공무원 계 4 다음에 “경정 4”를 신설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74”를 “279”로 하고, 일반직 계 “38”을 “39”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의무사무관·간호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0”을 “11”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항공관제 담당) 2 다음에 “경찰공무원 계 4”를 신설하며, 경찰공무원 계 4 다음에 “경정 4”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119종합상황실) ① 119 종합상황실에 상황담당관 4명을 두며, 소방정으로 보한다.</u> <u>②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119종합상황실장을 보좌한다.</u> <u>1. 화재진압 · 구조 · 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 · 재해, 그 밖의 상황의 관리 · 조정에 관한 사항</u> <u>2. 소방재난등의 접수 · 처리 · 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u> <u>3. 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 · 분석 및 전파</u> <u>4. 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 · 전달 및 처리</u> <u>5. 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 · 기록 · 통계 관리 및 정보 분석</u> <u>6. 시 · 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상황관리 및 운영 ·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u> <u>7.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u>

	<u>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u> <u>8. 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u> <u>9.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u> <u>색구조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u> <u>항</u> <u>10. 중앙119구조본부의 출동 지</u> <u>령 · 관제에 관한 사항</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u>274</u>		<u>279</u>	+5	
일	반	직	•		•		
계			•		•		
			<u>38</u>		<u>39</u>	+1	
			•		•		
			•		•		
행	정	사					
무	관	•					
공	업	사					
무	관	•					
의	무	사					
무	관	•					
간	호	사					
무	관	•					
시	설	사					
무	관	•					
방	재	안					
전	사	무					
관	•	전					
산	사	무					
관	•	방					
송	통	신					
사	무	관					
기	록	연					
구	관	•					
공	업	연					
구	관	•					
시	설	연					
구	관						
또	는	소					
방	령						
			•		•		
			•		•		
경	찰	공					
무	원	계					
			<신	설>	<u>4</u>	+4	
경	정						
			<신	설>	<u>4</u>	+4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74</u>	• <u>279</u>	+5
일반직 계	• • <u>38</u>	• • <u>39</u>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의무 사무관 · 간호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기록연구 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 • <u>10</u>	• • <u>11</u>	+1
경찰공무원 계	• • <u><신 설></u>	• • <u>4</u>	+4
경정	<u><신 설></u>	<u>4</u>	+4